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6월 10일, 김정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8. 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9. 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김정재)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위원회 소관 사무의 특성상 위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2항, 제47조의1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등

현행법 제47조의7에서는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하자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하자심의위원회는 제작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에 대한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률, 자동차,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을 1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자동차 분야 33인, 법률 분야 19인, 소비자 분야 등 8인 등 총 6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위원 60인 중 29인이 1회 연임 중이며, 8인은 2회 연임 중에 있음.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단위 : 명)

계	자동차				법률	소비자	기타 (당연직)
	소계	원동기 분야	샤시분야	차체 및 그밖의 분야			
60	33	15	3	15	19	7	1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하자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업무 특성상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알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음.

그런데 최근 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자동차 교환·환불을 위한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정된다는 지적과 현행 법률상 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특히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시 국토교통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 임기 제한, 특정 중재위원의 중복 선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 포함되기도 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먼저, 개정안은 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필요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입법례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은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비밀 누설금지 의무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 위원 해촉 사유에 포함하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비밀 누설금지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원 해촉사유에 포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